

#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94. 9.

제 출 자 안 산 시 장

## □ 개 정 이 유

-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과금별 분리 시행을 위한 관계 규정 정비

## □ 주 요 골 자

- 현행 통합 공과금 제도의 쓰레기 수수료 과징 규정을 삭제하고 상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 할수 있도록 함

## □ 기 타 사 항

- 관계법령 : 폐기물 관리법 제13조
- 기타사항 :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상수도 업무 추진 지침(내무부)

# 안산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쓰레기 수수료 납기)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쓰레기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.

1.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하며 상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 할 수 있다.
2.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,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 한다.

## 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쓰레기 수수료 납기)①쓰레기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.</p> <p>1.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, 납기는 10일, 20일, 말일로 하며,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</p> <p>2.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,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 한다.</p>	<p>제3조(쓰레기 수수료 납기)①쓰레기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.</p> <p>1.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, 납기는 말일로 하며, 상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 할 수 있다.</p> <p>2.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,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 한다.</p>